

忠清北道議會議員倫理 實踐規範(案)

1. 制定理由

- 道議會 議員은 道民을 爲하여 奉仕하는 公人으로서 關係規程에 依하여 賦與된 地位를 유지하고, 그 職務를 遂行함에 있어 倫理的 師表가 되므로써, 健全한 民主政治에 基盤을 굳건히 다지고자 하는 것임.

2. 制定經緯

- 地方自治法 第34條의 議員의 義務條項을 基低로 하여 1991年 9月 30日 忠清北道議會 議員倫理綱領制定 特別委員會를(趙誠勳 議員, 張寅基 議員, 李光浩 議員, 車珠龍 議員, 禹范成 議員, 劉永勳 議員)構成하여 倫理綱領案을 制定하여 1991年 10月 9日 忠清北道議會 議員倫理綱領을 制定한바있으며, 持續的인 實踐을 爲하여 本 規範을 制定하는 것임.

3. 實踐規制

道議員으로서 本規範에 反하여 社會에 물의를 야기하는 事由가 發生하였을때 에는 1次 倫理綱領制定特別委員會로 하여금 對策을 講究토록 한다.

議員倫理 實踐規範(案)

第 1 條 (倫理綱領 遵守) 道議會 議員은 道議會 議員 倫理綱領을 誠實히 遵守 하여야 한다.

第 2 條 (品位 維持) 道議會 議員은 公私生活에 있어서 道議員의 品位를 損傷 하는 行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 3 條 (清廉의 義務) 道議會 議員은 職務와 關聯하여 清廉하여야 한다.

第 4 條 (職權濫用 禁止) ① 道議會 議員은 그 지위를 濫用하여 不當한 영향력 을 행사 하거나 그에대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② 도의회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企業體와의 契約 이나 그 처분에 依하여 財産上의 權利, 利益 또는 地位를 取得하거나 他人을 爲하여 그 取得을 斡旋하여서는 아니된다.

第 5 條 (機密누설 금지) 道議會 議員은 職務上 取得한 國家 安全保障에 重大 한 影響을 미치는 國家機密을 正當한 事由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 6 條 (謝禮金) 道議會 議員은 講演, 其他 活動과 關聯하여 個人, 團體 또는 機關으로부터 通常의이고 慣例的인 基準을 넘는 謝禮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第 7 條 (兼職 禁止) 道議會 議員은 關係規定에서 禁止하고 있는 職을 兼하 여서는 아니된다.

第 8 條 (回避義務) 道議會 議員은 審議對象 案件이나 道政監査 또는 調查의 事案과 直接的인 利害關係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事전에 소명하고 關聯 活動에 參與하여서는 아니된다.

第 9 條 (虛禮虛飾 禁止) 道議會 議員은 家庭의례에 관한 法律을 성실히 준수하고 과도한 선물행위를 하지 아니하는등 근검 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하여야 한다.

第 10 條 (國外活動에 관한 報告등) 道議會 議員은 職務上 國外活動을 하는 경우에는 誠實히 申告또는 報告하여야 한다.

第 11 條 (會議 出席) 道議會 議員은 會期中 結婚式 主禮등을 理由로 本會議 또는 委員會등 各種 會議에 正當한 事由없이 不參함으로써 議政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第 12 條 (住民 啓導) 道議會 議員은 道政發展의 旗手로서 住民을 啓導하고, 靑少年 善導에 앞장서야 한다.

附 則

이 規程은 1991年 10月 부터 施行한다.